

국회에서 의결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문 재 인 인

2019년 4월 16일

국무총리 이낙연

국무위원

법무부장관

박상기

● **법률 제16314호**

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제9조 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를 포함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.

제10조의 제목 중 “등의 통지”를 “등에 따른 조치”로 한다.

제21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제21조의3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제9조의2제1항제3호를 포함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.

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보호관찰소의 장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그 피부착자 1명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준수사항 부과에 관한 적용례) ① 제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② 제21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◇개정이유

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 등을 범한 자의 재범 및 보복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선고하는 경우 특정인에의 접근금지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,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그 사람 1명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◇주요내용

가. 법원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하도록 함(제9조의2제3항 신설).

나. 법원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성폭행한 사람에 대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하도록 함(제21조의4제2항 신설).

다. 보호관찰소의 장은 19세 미만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부착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피부착자 1명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도록 함(제32조의2).

<법제처 제공>